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08
----------	-------

발의연월일 : 2025. 7. 7.

발 의 자 : 박지혜 · 이개호 · 박수현

박지원 · 서영교 · 박민규

김남희 · 허성무 · 황정아

송재봉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까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관련 사무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나누어 맡아왔음. 그 결과 에너지 연소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목표가 에너지 정책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첫 단추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후 정책의 실행력이 그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해당 업무는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영국, 독일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에서는 에너지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에너지 전환을 책임지

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음.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 달성까지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빠른 실행이 중요하므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무와 에너지 사무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조직에서 다루도록 함은 물론이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운영은 물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해당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반도는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특히 평균기온 상승 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환경부의 담당 사무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자원 정책 관련 사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적응을 추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등).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기후에너지부

제38조제1항 중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을 “중견기업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개발 및 하천”을 “개발, 하천 및 기후변화 적응”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기후에너지부) 기후에너지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

관의 소관 사무 중 제46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기후에너지부장관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의 소속 공무원 중 제46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46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 및 환경부령은 기후에너지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후에너지부장관이 승계하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기후에너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기후에너지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기후에너지부장관이 승계하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부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 1. ~ 19. (생 략) <u><신 설></u> ② · ③ (생 략)	제26조(행정각부) ① ----- ----- --. 1. ~ 19. (현행과 같음) <u>20. 기후에너지부</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 · 무역 · 공업 · 통상, 통상교섭 및 통 상교섭에 관한 총괄 · 조정, 외 국인 투자, <u>중견기업, 산업기술</u> <u>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 · 지하</u> <u>자원에</u>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 ⑤ (생 략)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 ----- ----- ----- ----- <u>중견기업 및 산업기술</u> <u>연구개발정책</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 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 · 이 용 · <u>개발 및 하천</u> 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한다. ② · ③ (생 략) <u><신 설></u>	제40조(환경부) ① ----- ----- ----- ----- <u>개발, 하천 및 기후변화 적응</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기후에너지부) <u>기후에너지</u> <u>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u> <u>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u> <u>· 운영 및 총괄 · 조정, 에너지</u>

	·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